식중독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

○○학교

식중독 발생 의심		▪ 복통,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 학생이 있을 경우 **담임교사는** 신속하게 보건실로 안내 ⇒ **보건교사는** 동일원인·증상이 2명이상 발생 시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으로 의심 ⇒ 즉시 **학교장에게 보고**
▼		
식중독 의심환자 조사·신고		▪ 학교장은 **긴급부장회의 소집**(유증상자 현황 조사방법, 조사내용 등 결정) ⇒ **담임교사를 대상하여 조사요령 교육** ▪ 담임교사는 각 반별(전교생)로 조사하여 유증상자는 ⇒ 보건교사가 개별면담 후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 ⇒ 학교장은 동일원인·증상 학생이 **2명 이상일 경우 즉시 유선신고(교육청, 보건소)**
▼		
역학 조사 [신고 당일]	학 교	▪ 역학조사 전에 환자에게 **약물투여 금지 및 급수 중단조치** ▪ 역학조사 실시 전까지 대상자(학생, 급식관계자) **귀가 보류** ▪ **현장보존 철저(보존식, 먹는물, 식재료 등 보존, 소독·폐기 등 금지)** ▪ **「학교 식중독 대책반」가동**⇒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지원, 응급환자 병원 이송, 수업결손 및 결식학생 대책 마련, 언론보도 대응, 치료 및 보상 대책 검토 등 ⇒ 가정통신문 발송 ▪ **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보고 : 서면보고(역학조사 후 즉시)** ▪ 보건소, 교육청과 정보공유(환자발생 현황 및 언론보도 대응 등)
	교육청	▪ 역학조사 협조 및 학교 식중독 대책반 업무 지원 ▪ 학교 위생관리 실태조사 ⇒ 원인파악, 특별 위생점검 및 지도 강화 ▪ **확산방지 노력** 및 환자발생 현황보고【학교 ⇒ 교육청 ⇒ 본청】 ※ 외부 간식반입, 인근 분식점 이용, 수련회 등 조사하여 역학조사에 반영토록 함
	역학조사 / 보건소/행정구청/식약처	▪ **역학조사 실시** ⇒ 환자 및 급식관계자 설문조사, 채변검사(한 장소에 집결) ▪ **음용수 및 조리수 수질검사** ▪ **환경 가검물(칼, 도마, 식판 등) 채취** ▪ **보존식 수거 【최근 144시간(6일) 동안 보관된 보존식】** ▪ **조리과정 및 조리장 환경조사** ▪ 집단급식소 관련 행정사항 조사 ⇒ 각종 신고사항 등
▼		
환자발생 익일 이후		▪ 환자발생 현황보고(학교 ⇒ 교육청 ⇒ 본청) : **완치 일까지 매일 2회 보고 (1회 : 09:00까지 유선, 2회 : 16:00까지 서면)** ▪ 교내방역 및 학생 개인위생지도 철저 ▪ 외부음식 반입금지 등 위생취약분야 관리 철저
▼		
역학조사 결과 통보 이후		▪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학교는 교육청으로 **"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보고" 제출** ▪ 「**학교 식중독**」으로 판명 시 **관련자 처분** 및 업체 계약해지 등 ▪ **후속조치**(환자보상금 지급, 계약보증금 징구, 업체선정 및 계약 등)